

<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신기술 · 특허공법 제안서 설명자료

2023. 2.



[종합건설본부]



II

과업 개요

1. 과업명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백석고가교 주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소음피해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방음시설을 계획하고 설계하여 고가교 주변 교통소음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위치 및 과업기간

- 위치 : 인천시 서구 당하동 백석고가교 주변
(드림로, 검단힐스테이트4차아파트 ~ 당하KCC스위첸아파트)
- 과업기간: 2020. 8. 24. ~ 2023. 11. 8.

III

신기술 · 특허공법 선정 평가 대상

1. 현황

- 본 과업은 백석고가교 주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소음피해 집단 민원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몇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백석고가교를 철거하고 독정사거리를 기존 입체고가교에서 평면교차로 변경하는 안으로 과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백석고가교가 위치한 드림로는 현재 폭원 20~30m의 4~5차선 도로이며, 백석고가교는 교량(PF거더교) 연장 99.9m, 옹벽 연장 330.1m로 총연장 430m, 폭원 11.0의 왕복 2차선 도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함.
- 백석고가교의 측도는 독정사거리 서측의 경우 1차선으로 운행중이며, 동측의 경우 이마트 측면도로는 3차선으로, 상업시설과 당하 KCC스위첸아파트 일대 측면도로는 2차선으로 운행중임.
- 따라서 하부도로에 차량통행을 유지한 상태에서 철거공사가 병행되어야 하고, 과업 주변에 공동주택이 인접하여 있으므로 구조물 절단시 안전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무소음, 무진동, 친환경적인 철거계획을 위해 구조물 절단공법을 신기술·특허공법으로 선정하고자 함.

- 또한 도로포장에 소음저감 효과가 우수하고, 내구성 및 부분보수가 용이하며, 제품에 대한 성능이 보장된 저소음 포장을 신기술·특허공법으로 선정함으로 주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소음피해를 해소하고자 함.

2. 구조물 절단공법

- 철거 구조물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단 위	비 고
철근콘크리트 절단공법	• 백석고가교 구조물 철거공 중 절단공법	식	1식

- 절단 구조물 수량

구 분	구 간	연장(L)	폭(B)	절단수량
본 선	교량구간 (PF 거더, 교대, 교각)	99.90m	11.0m	833.77㎡
	시·종점 RC 옹벽	170.78m	11.0m	528.88㎡
합 계				1,363㎡

- 개략공사비 : 6.5억원

※ 절단은 별첨(개략 검토된 절단 계획도)을 참조.

※ 현장여건 등에 따라 물량 및 사업비는 변경 될 수 있음

3. 저소음 포장

- 저소음 포장 수량

구 분	연장(L)	폭(B)	포장수량
저소음 포장 표층(T=5cm)	840.0m	25.0~31.0m	23,500㎡

- 개략 자재비 : 4.5억원

※ 현장여건 등에 따라 물량 및 사업비는 변경 될 수 있음

※ 공법 특성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자재(유공관 등)는 단가에 포함하여 제출.

- 중간층(조절층)은 자재비에서 제외

4. 현장사진

교량
구간



시점
옹벽



종점
옹벽



1. 공사비 산출기준

- 가. 모든 제안금액 표기는 합계금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 순서로 기재하며 직접공사비로 제출해야 합니다.
- 나. 제안금액 산출 시 필요한 상세제원은 참고도면(절단계획도, 평면도)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제시된 참고도면은 동일 견적조건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상세설계 및 각종행정절차(VE, 건설기술심의) 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다. 제안조건 [일위대가 (원/ m^2 당) 및 m^2 당 산출내역서]을 명기하여 별도 첨부해야 하고 구조물 절단 공법의 경우 절단 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시설 1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 라. 제안금액은 2023년 상반기 노임단가, 2023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2023년 2월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등 가격정보지, 2023년 상반기 기계경비 및 품셈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하여야 합니다.(이 외의 단가는 견적서 등 증빙자료 제출)
- 마. 발주청에서 제시한 공사규모와 동등한 물량으로 공사할 수 있도록 제안금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 사. 제안금액(공사비) 작성 시, 필히 현장을 면밀히 조사 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 조사 미비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은 공법제안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 제출된 견적금액은 가격평가 점수에 반영되므로 설계과정에서 누락, 오기 등의 사유로 증액이 불가함

2. 기타 유의사항

- 가. 제안공법(자재)의 재료(품질), 시공 등은 한국산업규격(KS) 및 국토교통부 등의 표준시방서 기준과 동등 또는 우수한 공법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 나.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환경성, 내구성, 유지관리성 등의 측면에서 일반공법에 비해 우수해야 합니다.
- 다. 선정된 공법 제안자는 기 제출한 내역서를 근거로 실시설계 용역사에게 공사비 내역서, 구조계산서, 도면(상세도 포함),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 선정 통보일 이후 발주청의 일정에 맞추어 제출 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설계지원 등의 소홀로 인하여 향후 설계, 공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선정 취소되고 차 순위가 선정됨을 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라. 오류, 구조적 불안정 등 문제점 확인 시 제안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반드시 보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손실은 제안자(업체)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마. 향후 계약 시 제안한 금액에서 낙찰률 등이 적용됩니다.
- 바. 각종 행정절차(설계 VE, 건설기술심의 등) 과정에서 공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사. 시방조건 및 공사여건이 특수하여 공사금액에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 가격 제안서 내 명시바랍니다.(발주청 및 설계사와 공사비 포함 여부는 협의하여야 하며, 미협의로 발주된 내용에 대하여 추가 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 아. 자격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은 선정대상이 될 수 없음
- 자.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기술·특허·자재 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IV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작성요령

1.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평가 절차

- 신기술·특허공법 평가 관련 정보 홈페이지 게시(발주부서)
- 제안자의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서류 1식 제출(제안자 ⇨ 발주부서)
-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일시 홈페이지 게시(발주부서)
-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제안자 발표)
- 신기술·특허공법 설계 반영(설계사 / 제안자)

2. 제출 관련

- 제출일자: 2023. 2. 24.(금) 14:00~16:00
-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지하2층 민원상담실
- 제출처: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도로2팀 위인영 주무관
- 연락처 및 E-MAIL: 032-440-5213, doty1569@korea.kr

3.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순서

- 1) 표지 (서식 1)
- 2)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신청서 (서식 2)
- 3)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서식 3) ⇒ ※ 한글파일(HWP) 별도 제출
- 4) 기술의향서 (서식 4)
- 5) 신기술·특허공법 제안 서약서 (서식 5)
- 6) 청렴서약서 (서식 6)
- 7) 평가위원 제척·기피 신청서 (서식 7) ⇒ 필요 시 작성

- 8) 평가위원 제척·기피 확인서 (서식 8) ⇒ 심의 당일 제출
- 9)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예비) (서식 9)
- 10) 관련 도면 (공법 개요도)
- 11) 사업자등록증(사본)
- 12) 법인등기부등본,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신기술 인증서
- 13) 기업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나. 제출부수

- 제안서: 2부(원본 1부, 부분 1부, USB)
- ※ USB 저장 파일[제안서 1식(PDF, 한글 파일(HWP), 서식3 신기술·특허 공법 제안서 한글파일(HWP), 서식3 공사비에 해당하는 내역서(Excel 파일)]
- 제안서 발표자료(USB)
 - 프레젠테이션 작성(MS Office PowerPoint, 양식제공)
 - 표지, 목차 및 간지 제외 10페이지 이내(회사명 미표기)

다. 규 격: A4(210mm×297mm)

라. 표지및지질: 백색아트지, 백상지

마. 인쇄방법: 공판인쇄 등

바. 제 본: 세로 좌철(무사 무선철)

사. 제안서 제출 시 주의사항

- 1) 제안서는 상기 “제안서 작성순서” 및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는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자료의 정정 또는 추가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명 자료와 다르게 작성하는 등 작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자(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청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 4) 제안서에는 쪽 번호를 기입하고 비고란에 증빙(첨부)자료의 해당되는 쪽번호를 기입합니다.
- 5) 제안서 발표 자료는 제안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작성 하시고, 맨 뒤에 첨부합니다.
- 6) 서식 8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 1> 표지

관리 번호	
----------	--

2023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2023. .

(주)○○○○○○○ 대표이사 ○ ○ ○

구 분	(주)00000(대표사)	비 고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FAX번호		
제안서 작성자		

- ※ 전화, FAX번호는 제안서 작성자와 연락이 가능한 번호일 것
- ※ 제안자(업체명) 앞에 회사CI 사용가능.

업 체 명

분류기호

2023년 월 일

수 신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참 조 토목부장

제 목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신청서 제출

1.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구조물 절단공법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청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에 따른 참가자격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만일, 제출 서류가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부정당업체 제재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귀 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제출자 : (인)

(대표사) 주 소:

회 사 명:

대표이사: (인)

- 붙임 1.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서류(서식 1~9) 각 1부.
 2. 신기술·특허공법 제안관련 증빙서류 1식 1부. 끝.

업 체 명

분류기호

2023년 월 일

수 신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참 조 토목부장

제 목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신청서 제출

1.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저소음 포장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청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에 따른 참가자격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만일, 제출 서류가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부정당업체 제재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귀 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제출자 : (인)

(대표사) 주 소:

회 사 명:

대표이사: (인)

- 붙임 1.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서류(서식 1~9) 각 1부.
2. 신기술·특허공법 제안관련 증빙서류 1식 1부. 끝.

<서식 3>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1. 신기술·특허공법 개요

구분		내용
회사명		
소재지	본사	
	공장	
공법명		
신기술, 특허권자		
신기술 및 특허명		
등록권리 만료기간		
신기술·특허의 실시권여부		신기술 보유자(), 특허권자()
제안자 (법인)	주 소	
	상 호	
	대표이사	

2.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자료 (구조물 절단공법)

구분	000공법
개 요 도	
공법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하 환경성까지 4줄 이내로 간략히 기술하시기 바람. •각 항목별 키워드에 볼드처리 요망 • •
시 공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안 전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현장 적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환 경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등록일자	특허 제 10- 호 2020. 00. 00.~2020. 00. 00 ○○신기술 제○○○호 2020. 00. 00.~2020. 00. 00

- ※ 특정업체가 다수의 신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하나에 대해서만 기술의향서 제시가 가능하며, 하나의 기술(신기술·특허)에 대해서도 한 업체만 기술의향서 제출이 가능함.
- ※ 제안자료 제출 시 회사명을 암시하는 자료를 첨부할 경우, 보완요구 조치

2.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자료 (저소음 포장)

구분	000공법
개 요 도	
공법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하 환경성까지 4줄 이내로 간략히 기술하시기 바람. •각 항목별 키워드에 볼드처리 요망 • •
시 공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유지관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환 경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등록일자	특허 제 10- 호 2020. 00. 00.~2020. 00. 00 ○○신기술 제○○○호 2020. 00. 00.~2020. 00. 00

- ※ 특정업체가 다수의 신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하나에 대해서만 기술의향서 제시가 가능하며, 하나의 기술(신기술·특허)에 대해서도 한 업체만 기술의향서 제출이 가능함.
- ※ 제안자료 제출 시 회사명을 암시하는 자료를 첨부할 경우, 보완요구 조치

3. 신기술 · 특허공법 제안금액

○ 구조물 절단공법

항목	수량 (m ²)	단가(원/m ²)	직접 공사비(천원)
철근콘크리트 절단			

○ 저소음 포장

항목	수량 (m ²)	단가(원/m ²)	자재비(천원)
저소음 포장			

※ 내역서 작성 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및 수량, 내역은 제안하는 항목에 대한 직접공사비로만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비, 부가가치세는 제외하여 미포함 되었음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역서에 제시된 금액으로 선정된 후, 실시설계시 금액 변경 불가합니다.
- 공사비 및 자재비에 해당하는 내역서는 Excel로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제출자 : (인)

(대표사) 주 소:

회 사 명:

대표이사: (인)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귀하

<서식 4>

기 술 의 향 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 예정인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신기술·특허 공법선정위원회에 대하여 본사(인)는(은) 신기술(특허) 제000호 ○○○○ 제안자로 참여를 요청합니다. 해당 기술의 제안자로서 공법선정위원회 평가를 위한 발주청 및 설계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 할 것이며, 참여업체로 선정 시 상호간 협의한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본 공사입찰·계약·시공추진 등에 있어 공사추진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낙찰자와 충실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착공 이후 본 기술에 대한 협의지연(모든 분쟁포함)등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유(발주청 판단) 발생 시 협약서 무효 및 참여업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발주청 결정 결과의 조건 없는 수용을 확약합니다.

2023. .

제안자(업체명):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귀하

주의) 협약서는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를 말함

신기술·특허공법 제안 서약서

본 제안서 제출자는 귀 본부에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제출에 있어 제안 안내서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제공하는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설명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제안서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차후 실시설계 시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공사비가 작성 될 경우 귀 본부의 처분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또는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약인(제안자) (주) 〇 〇 〇 〇 〇

대표이사 (인)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귀하

청 럽 서 약 서

당사는 귀 본부의 신기술·특허공법 평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본 평가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평가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상호명)

주 소: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귀하

<서식 7>

평가위원 제척·기피 신청서

- 사업명 :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안전명 :
- 제척·기피 대상

분야	성명	소속	제척·기피 사유	비고

※ 작성시 주의사항

1. 근거 및 사유를 필히 제시하여 주십시오.
2. 필요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2023.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귀하

평가위원 제척·기피 확인서

당사는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반영할 신기술·특허공법 평가와 관련하여 선정된 평가위원 중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되거나 평가위원 자격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위원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평가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신기술·특허공법 공법선정위원회 제척 또는 기피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23.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귀하

<서식 9>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예비)

- 신기술·특허명 :
- 발주기관 :
- 신기술·특허 보유자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발주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특허공법 부분만의 (기술사용·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비율 %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 ②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 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